

< 경제적 효과측면 >

- ① 주민카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규모
- ② 주민카드제 시행에 따른 연간 운영경비
- ③ 주민카드제 시행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순수부담 비용
- ④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예산·인력 절감효과
- ⑤ 전자정부구현 등 타 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
- ⑥ 국민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⑦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미치는 효과
- ⑧ 정보화관련 산업 등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5] 行政 措置 事項

가. 용역시행 소요예산 확보

- 총 소요예산 : 20백만원
- 예산 확보 대안 : 주민등록증경신 연구개발비 사용

나. 연구기관별 책임연구관 협의회 구성·운영

- 연구기관별 책임연구관 지정, 협의회 구성
- 책임연구관 협의회 개최, 연구방침 등 협의
 - 연구초기 및 연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시 등

① - 7

인권 자료실		
등록번호	자료번호	일련번호
48 5/12	B4-1	15

"봉사하는 소명의식 사랑받는 공직사회"

내 무 부

우110-760/서울중로구세종로 77 종합청사 1306호/전화731-2330/전송731-2863 김경희

문서번호 주민 13210- 347

시행일자 '97. 6. 7 (3년)

경 유

수 신 대한변호사협회

합 정 호협회장 귀하

제 목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변협 제626호('97.5.29)와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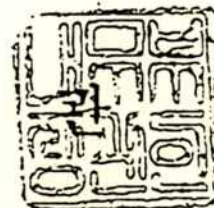
2.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 그간 우리부는 주민카드사업을 반대하는 분들과도 토론회·공청회를 같이 하면서 주민카드에 대한 오해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그 분들의 의견과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4. 귀협회에서 보내주신 우려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주민카드사업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결코 다른 의도가 없음을 이해하시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귀협회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1부. 끝.

내 무 부 장



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귀협회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주요제시의견 >

- 주민카드를 정부가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
- 모든 주민등록정보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운전면허정보가 중앙으로 통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
- 주민등록제도가 문제의 뿌리로서 주민등록증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모두 들어 있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지구상에 안전한 전산망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보안 대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인 주민등록법개정안 반대

□ 우리부 의견

- 주민카드사업은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와 운전면허증제도를 관리하는 경찰청,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주민카드사업은 현재 위·변조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종이 주민등록증을 경신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권한과 소관이 다른 타증명을 함께 수록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전자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부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카드 사업은 현재 이미 각각의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사항을 주민카드라는 매체에 담아 해당업무별로 각각의 소관과 권한에 따라 현재와 똑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전산망을 구성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카드로 인해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여러개의 증명은 본인이 소지하는 주민카드에만 수록되며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주민카드의 전체 수록내용을 보관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 또한 각각의 증명자료는 주민카드를 발급할 때에만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용하고 주민카드발급이 끝나면 통보받은 자료는 삭제하게 되므로 정보가 중앙에 집중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산망 간에도 서로 연결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되어 오랫동안 국민생활속에 뿌리를 내린 주민등록법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면서 국민이 필요할 때 적은 비용으로 공증도 해주고 국민을 위한 교육·주택·교통·고용정책등을 수립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속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그간 우리부는 주민카드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각계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카드에 대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끝으로, 다시한번 귀협회의 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반영된 주민카드자료의 개인사생활보호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협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는 지금까지 민변협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동일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여러번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자료 >

주민카드資料의 個人私生活保護對策

□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자료는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병원진료기록, 교통법규위반사항,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하고
- 주민카드자료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주민카드자료를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등에 대해서도 당해업무
수행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함

□ 분실카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 주민카드에 개인별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고
- 분실신고된 카드는 발급센터에 분실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법에서 규정
 -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주민등록업무담당자,
 - 법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자, 업무수행자

-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통보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는 주민카드발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카드발급 후에는 해당자료를 삭제하도록 함
- 자료관리기관장에게 주민카드자료의 훼손, 유출, 멸실방지 등의 안전조치 및 자료보호조치를 의무화 함
- 주민카드자료 관리자와 운영자는 목적외 처리하거나 자료누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자료관리기관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
-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민카드자료보호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주민카드를 불법사용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주민카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주민카드를 채무이행의 확보등으로 제공 또는 제공받은 자
- 주민카드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이 열람한 자
- 내무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카드자료를 통보받아 주민카드발급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취득한 자료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다른기관에 제공한 자
- 주민카드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목적외 자료처리를 하거나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

2-5

국문실		
98		
5/12	134-1	14

電子住民카드 事業推進 現況

基本計劃

- 주민등록증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 사업은 3개년('96 ~ '98) 계획으로 추진
-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등 총 2,735억원 투자
-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협의회 및 기획단 운영

□ 推進經緯

- '95. 3. 15 : 주민등록증 경신 기본계획 수립
- '95. 4. 18 : 국무회의 보고(4.13 차관회의 보고)
- '95. 6. 30 : 전자주민카드발급 시범사업 착수
- '96. 2. 29 : 전자주민카드 시연회 개최(과천시)
- '96. 3. : 한국전산원 주관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
- '96. 5. 7 : 세부 사업추진계획 확정(추진협의회)

□ 事業推進 現況

1. 推進企劃團 運營

- 관계기관 합동(18명, 상주 9)으로 편성하여 1년째 운영중
 - 관계법령, 통합증명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도개선사항 검토
 - 전자카드의 모형 및 통합방안, 운영절차 등 발급계획 수립
- 전담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추진기구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

2. 示範事業 推進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을 대상으로 10개월('95.5 ~ '96.2)간 추진
- 총 5,000명(주민 1,000, 공무원 4,000)에게 전자주민카드 발급
- 과천시 중앙동 관내 행정기관, 병원, 약국 등 24개소 시범적용
 - PC 등 장비 42대 설치 및 7개분야 36개업무(S/W) 개발
-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자료열람업무 전반 시범운영 실시
- 과천시 주민 및 협의회 위원, 관계기관 관계자 합동 시연회 실시

3. 地方自治團體 示範用 카드發給

-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용 카드 발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장급 이상 간부 등
- 시도별로 자체 시연회를 개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군·구별로 민원실에 장비를 설치 주민홍보 실시
 - ※ 시·도별 의견을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

4. 示範事業 評價

- 『한국전산원』과 학계 전문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 투자에 비하여 23.5배의 높은 경제적 실익이 있고
 -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임
- 향후 『한국전산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5. 財源確保

- 3년간 총 2,735억원 투자 필요
 - '96년에 총 478억원(국비 300, 지방비 178)을 확보, 사업추진중
 - ※ 시범사업비로 4억원 집행(초고속공공서비스사업비)
 - '97년도 예산에 총 882억원(국비 618, 지방비 264) 반영 계획
 - ※ '98년도에는 1,375억원 소요

6. 電子住民카드 標準化 推進

- 추진기획단과 국내 반도체 전문 연구진, 보안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카드에 사용할 IC 표준화 추진(통상산업부등)
 - IC규격, COS, 자료관리 체계, 통신방식 등
- 상반기중에 관계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최종(안) 확정 공고

7. 保安體系 研究

-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 연구
 - IC암호화 알고리즘, 전자카드의 발급 및 운영 보안체계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전국민의 인적정보를 관리할 발급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안대책 다각적 강구

8. 細部推進方案 持續檢討

- 추진기획단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작에서 발급, 운영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전자카드의 모형 등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최적(안) 선정
 - 주요사항은 한국전산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방안 연구
 - 추진기획단과 협의회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침 결정

다.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협 의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원, 내무부, <u>안기부</u>,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의 국장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의 이사, 단장 ○ 학계(정보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심의·조정 - 제도개선사항 심의 - 재원조달 및 일정계획 심의
추 진 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원, 내무부, <u>안기부</u>,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 전산망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총괄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추진 - 발급전담기관 및 전산망 사업자 관리, 감독 - 발급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 카드 및 장비의 표준화 - 전자주민카드 검수

↓
회의록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감리기관	한국전산원	- 기술자문 - 사업감리
전 산 망 사 업 자	-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전산망 및 발급센터 구축 - 발급 및 운영업무 개발 - 시험운영 및 교육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 지원 - IC 검수 - 운영장비 사양제정
발 급 전담기관	한국조폐공사	- 증 도안작성 및 백지증 제작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 지원 - IC 검수 - 증 위·변조방지 기법 개발 - 발급시설 구축 및 발급
운영기관	공 공 기 관 민 간 단 체 제증명이용기관	- 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 변동사항 갱신발급 - 화상DB 입력 - 전자주민카드 활용 - 대국민홍보

住民登録證 更新事業 豫算内譯

1996.11.1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96년			'97년			'98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273,520	184,220	89,300	48,240	30,440	17,800	62,454	36,054	26,400	162,826	117,726	45,100
카드구입 및 발급 ('97. 6 ~ '98. 6)	210,000	140,000	70,000				53,975	28,575	25,400	156,025	111,425	44,600
발급센터 구축 ('96. 7 ~ '97. 12)	25,034	25,034	—	22,820	22,820	—	1,009	1,009	—	1,204	1,204	—
업무개발 ('96. 7 ~ '98. 12)	8,910	8,910	—	6,705	6,705		870	870		1,135	1,135	
운영망 구축 ('97. 6 ~ '98. 12)	10,562	9,562	1,000				6,600	5,600	1,000	3,962	3,962	—
화상정보구축 ('96. 10 ~ '97. 6)	17,000	—	17,000	17,000	—	17,000						
기타경비	2,015	715	1,300	1,715	915	800				500		500

□ 수록항목

대상업무	가시적 기록사항	IC 수록사항
계	12개 항목	42개 항목
주민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발급지) · 사진 · 발급일자 · 발급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사진 · 인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사항 · 인적사항 · 개인주소이력 · 병역사항 · 세대사항 · 가족사항 · 세대주소이력 · 기타(혈액형 등) · 검증항목
운전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종류 · 면허조건 · 면허번호 · 적성검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발행기관 · 면허조건 · 적성검사기간 · 교부일자 · 별점 · 정지/취소여부
의료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기호 및 명칭 · 보험자구분 · 관리번호 · 피보험자사항 · 피부양자사항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 진료지역 · 유효기간
국민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취득일 · 최초가입종별 · 총납입액 · 총가입월수 · 가입자와의 관계 · 가입자연금번호 · 급여종별 · 수급사유일 · 수급증서번호 · 최종수록일
지 문	· 지문	· 지문특징점
기 타	· 의료보험유의사항	· 각 증명의 발급기관장

3 制度改善 推進

< 概要 >

-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관련 개별법령 개선
 - 현행 규정 개정 및 전자카드의 제도적 시행근거 마련
 - 주민등록제도등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사생활 최대한 보호 중점
- '97. 12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완료

□ 지금까지 推進現況

- 추진기획단에 제도개선팀을 구성, 각 개별법령 검토 추진
 -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국민연금제도
 - 전자주민카드로의 전환에 따른 증명서식, 증명운영방법, 정보활용근거 등 검토
- 증의 명칭 및 도안등은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 확정예정(한국전산원)

□ 推進方針

- 추진기획단에 법령, 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연구팀 구성 운영
- 유관기관 및 시·도에 자체 연구팀을 구성 추진기획단과 상호협조
- 한국전산원에 산·학·연 합동팀을 구성 기술·정보 보호분야 연구
-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대국민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 推進計劃

○ 정비대상

· 통합증명제도 운영과 관련한 3개기관 5개법령(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내 무 부 :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 보건복지부 :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 경 찰 청 : 도로교통법

※ 기타법령은 주민등록법에서 일괄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법의 관계규정 개정

○ 검토절차

- 추진기획단에서 기본적인 개정사항 및 처리절차 작성·통보
- 각 기관별로 개별법의 개정(안) 검토 및 작성
-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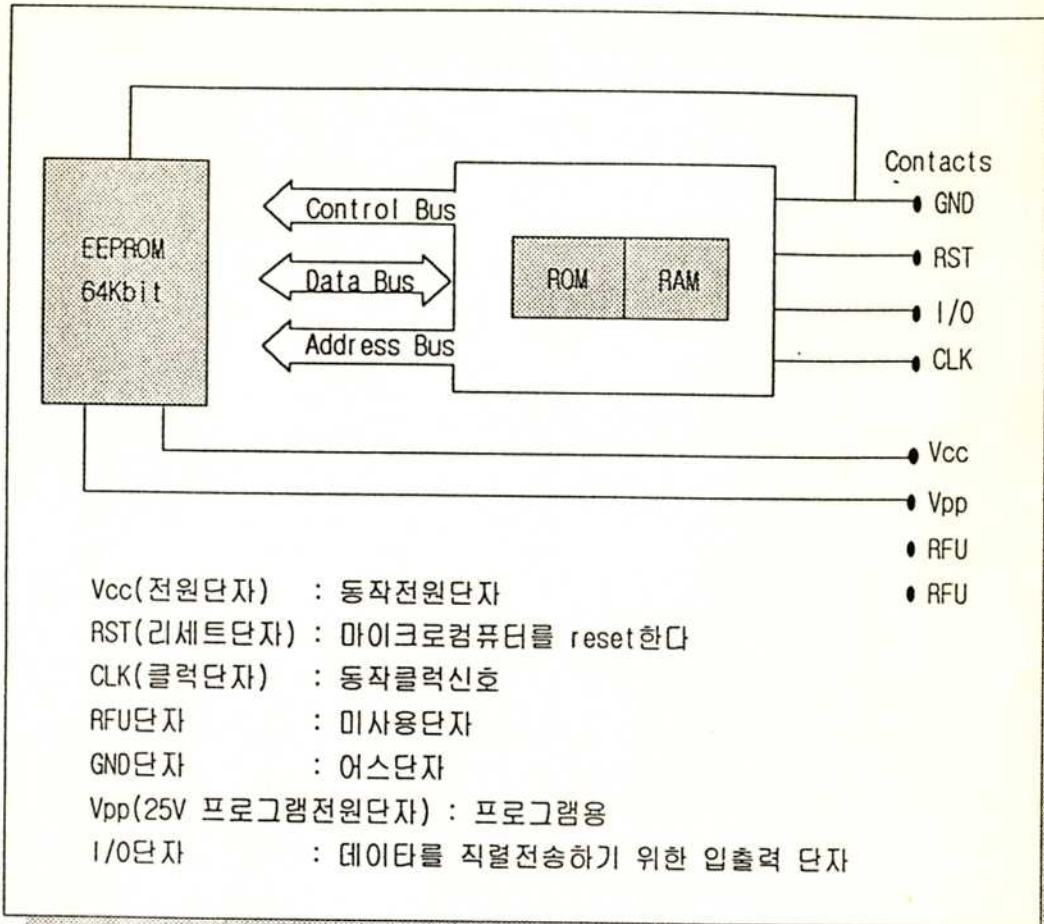
○ 추진일정

- 제도개선(안) 연구·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 '96. 12
-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97. 2
- 국무회의 심의 및 임시국회 상정 : '97. 4 ~ 5
- 시행령·시행규칙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 '97. 12

카드 사양

항 목	내 용
C P U	○ 8 Bit Micro Computer Unit
운영체제 (COS)	○ 국제규격(ISO 7816-4)에 따른 명령체제 ○ 전자주민카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범용 COS 사용
기억용량	○ EEPROM(8KByte) 이상의 Multi-Directory구조
통신방식	○ 국제규격(ISO 7816-3)에 따른 반이중 비동기 통신방식 (속도 : 9600 , 19200, 38400 bps)
접점위치	○ 국제규격(ISO 7816-2)에 따름
크 기	○ 국제표준규격(ISO 7810, ISO 7816-1)에 따름 (가로 85mm × 세로 53.98mm × 두께 0.8mm)
재 질	○ 수매의 적층 PVC
내 구 성	○ IC의 자료 수록은 십만회 이상 가능해야 하며, 10년 정 도의 내구성을 가져야 함 ○ 정전기, 비틀림, 자외선 등 외부환경에 대해 안정성이 있어야 함
보 안 성	○ 카드의 제작설계시부터 카드의 권역별 사용시까지 단계 별, 권역별 암호화키 적용으로 카드의 불법활용을 근본 적으로 봉쇄

칩구조



구분	규격 / 용량	사용내역
CPU	8 Bit	중앙처리장치
ROM	16 Kbyte	COS, <u>Security Algorithm</u>
EEPROM	8 Kbyte	Security Area (Key), Data Area
RAM	256 Byte	System Work Area (Buffer)
I/O		R/W Interface, 내부 Interface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99 5/12	B4-1	41

전자주민카드 사업개요

내무부

I. 서론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1950년 각 시·도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시·도민증제도를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여 국가신분증 제도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1968년 11월부터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현행과 같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동태를 파악하여 선거, 조세, 취학, 병역, 복지, 주택 등 국가 주요 행정 사무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17세가 되면 호적과 병적(兵籍) 및 신원을 확인한 후 개개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용모 변화 등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종이로 제작 사용한 결과 범법자 등에 의해 위조, 변조한 증을 사용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능도 신분 확인에 한정되어 활용도가 극히 단순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이나 카드가 너무 많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기관에서 관리하는데 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각종 증명의 통합 필요성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신분증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필요성

현행 주민등록증은 갱신 주기가 훨씬 지나 사진의 탈·변색과 용모변화등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 할 뿐 아니라 위·변조가 용이하여 국가신분증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주민등록증의 기재 공간에 한계가 있어 가족사항과 주소 이력 등이 없는 관계로 별도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아니라 연간 1억 7천만 통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어 행정효율화 측면에서도 현행 증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범죄의 예방과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는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국내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외국 사례

전자카드는 유럽을 위주로 한 선진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의 건강카드, 프랑스, 스페인의 사회보장카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도로서 주민등록증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전자카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주민등록제도의 효용성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해 1962. 5월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제도는 지금은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조세, 취학, 병역, 복지, 주택 등 국가의 주요 행정 사무 처리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무원 재산등록, 국토정보센터, 국민연금제도 등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도 주민등록제도를 토대로 하지 않고는 시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주민등록제도는 경제·사회적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의 경우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경우 3개월에 걸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신고를 받고 명부 작성에 총 6조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 단 하루만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종이값 정도의 비용만 소요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II. 사업 개요

1. 제작 및 발급 절차

전자카드는 영문 8천자(한글 4천자)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 모체로 보안 기능이 뛰어나고 많은 기억용량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국민연금증서의 정보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내용과 등록인감, 지문(指紋)의 화상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주민카드를 제작하게 되며, 수록되는 정보는 총 41개 사항에 달합니다.

전자주민카드는 17세 이상 전국민에게 '98년부터 발급할 계획이며, 중앙에 발급 센터를 구축하여 초기에는 일괄 발급하여 읍·면·동에서 교부하고 일제 발급이 완료된 후 신규 17세나

분실자의 재발급은 민원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발급센터에서 발급하여 각 개개인에게 특수 등기우편으로 직접 우송하게 되며, 이때 기간은 신청후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자주민카드의 기능

카드 겉면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과 국민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 사진 등이 인쇄되어 있어 대표적인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별로 기능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분야는 공공기관, 학교, 은행, 기업체등에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병역증명서 대신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거리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분야의 기능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IC내에 수록된 등록 인감을 컴퓨터를 통해 열람, 발급하여 민원인이 소지한 실제 인감과 비교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되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보안장치가 마련된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발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지금까지 국민 불편 사항이던 운전면허증의 주소 이동 사항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처분 제도가 없어지게 되며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통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하므로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휴대용판독기(전자주민카드내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휴대용 장비)에 수배자나 도난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여 불심검문시 수배자, 도난차량을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어 의료보험 업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의료보험증이 지급되므로 보다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95년의 농어민연금제도를 비롯 '98년경에는 전국민의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연금가입금액이나 수령액을 알 수 없어 연금 가입이나 보험료 납입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주민카드에 연금 가입 내역을 수록하여 국민에게 연금 가입 상황을 알림으로써 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겉면에 위조·변조를 막을 수 있는 화폐수준 이상의 비표처리를 하고, IC내에는 안기부등과 협조 세계적 수준의 보안기능을 개발하여 위조·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여권변조, 금융사기, 미성년자 불법고용 등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여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는 우리로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신종범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별로 고유번호가 IC내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보화의 열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종 컴퓨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지금까지는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정,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를 위한 단계였으며, 내년까지 7가지 기능에 대한 전국민의 인적 정보를 통합하는 발급 센터를 구축하고 '98년부터는 17세 이상 전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년간 총 2,73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478억원, 내년에 887억원, 그리고 '98년에 1,36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자카드 구입 및 발급에 2,100억, 발급 센터 및 운영망 구축에 6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 발급센터>

- 중앙에 전자주민카드 발급기구 설치
 - 전산망 구축·관리 : 내무부 전담
 - 전자카드 제조·발급 : 조폐공사 전담
- 기능
 - 통합증명의 종합정보망 유지관리
 - 전자카드 정보입력을 위한 1억 9천만건의 자료관리
 - 읍·면·동 등 5천개 기관 1만대의 단말기 연계·운영
 - 일일 2백만건의 변동자료처리 및 열람업무 지원
 - 전자주민카드의 제조 및 발급관리
 - 국가 인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기능 수행

4. 기대효과

연간 1억 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감축 등 우리나라 증명발급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은행, 학교, 기업체 등에 제출하던 증명제도 대신 전자주민카드의 정보를 이용하는 제도로 전환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인력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의 과학적인 관리로 각종 범죄예방과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후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는 우리로서는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

산과 행정의 과학과, 국내 정보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세계화를 향한 선진국가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주민카드는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 우려되는 문제점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전자주민카드에 국민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편의와 주민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발급센터의 중앙집중에 따른 재해관리 대책과 IC, 장비 등의 국산화 기술 수준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통계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에는 현재 국민 개개인이 휴대하고 있거나 증명서로 제출하는 정보에 한해 수록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으나 잃어버렸을 경우 악용의 소지는 없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개인별 비밀번호를 쓰도록 할 것이며, 발급센터와 각 단말기에서 분실신고된 카드가 포착될 경우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처리하고 "불법카드 사용" 메시지를 알림으로써 불법사용자를 책출 처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급센터의 중앙집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설을 구축·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안기부와 협조하여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발급센터의 시·도 분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비용이 1천억원 이상 추가되고 500여명 이상의 인력증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도 주민센터의 기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방안으로 채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IC 장비의 국산 제조기술은 지난번 시범사업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만, 국내 반도체 기술로도 충분히 제작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정보기술이 응용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모든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III. 지 금 까 지 추 진 상 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계획 심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산·학·연 합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고, 실무작업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로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게 되며, 한국전산원에서 기술자문과 감리를 실시하고 전산망사업자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업무를 개발하게 되고, 개인정보보호와 발급센터의 해커 침입 방지 등을 위해 안기부, 국가보안센터등과 협의하여 다각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96. 5. 7. 전자주민카드 제작 및 발급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분야별 업무에 대한 세부설계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망 사업자가 선정되며 구체적인 업무개발 및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2,735 억원이 투자되며, 연도별로는 '95년에 5억, 금년에 478억, '97년에 887억, '98년에 1,365억이 소요되고, 금년에 국비 300억, 지방비 178억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IC 카드 규격은 통상산업부 등과 협의 전자주민카드용 표준규격을 제정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카드의 발급과 알고리즘 개발 등 보안관련 사항은 안기부 주관하에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IV. 앞으로 추진 계획

금년에는 전산망 사업자를 선정하여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사진, 인감 등 화상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97년에는 총 1억 9천만건의 자료를 발급센터에 구축하고 각 단말기관과의 온라인망을 연계하여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자료망과 운영망의 구축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98년에는 시·도별, 세대별로 17세이상 34백만 전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교부할 계획이며, 시·도 단위부터 저늑에 걸쳐 충분한 시험운영을 실시 각종 문제점을 분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일정대로 완료되면 '99년 부터는 전국에 걸쳐 전자주민카드가 실용화됩니다.

V. 결론

이상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추진상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반드시 좋은 면만 있

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려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대형 범죄 유발 가능성 등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제도적, 기술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주민카드 사업 역시 최첨단의 기술과 합리적인 제도하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검토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사연구 1996. 4/15

<특집>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와 수사

첨단과학시대에 사는 인간의 삶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지만 개인정보 노출 또한 심각하다. 사회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각종범죄에 악용되어 그 폐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개인정보의 법적인 보호방법과 경찰의 수사사례 및 방법을 각계 전문가를 통해 심층 진단해 본다.

- PART 1 / 서유창(총무처 행정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 PART 2 / 임범상(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신용정보법 관리제도
- PART 3 / 엄호성(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
개인정보 유출실태와 범죄이용 현황
- PART 4 / 이정원(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범죄구성 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 PART 5 / 김성천(위덕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
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첨단정보화시대는 사회 각 분야와 인간 삶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앞당기고 있으나 반면 정보의 집중과 악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범죄이용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94년 1월 제정·공포하여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배경과 그간의 시행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 글을 시작하며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화라는 시대사적 조류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등장은 사회 각분야에 있어서 다양화의 촉진, 개인의 창조적 개성 발휘 증대, 정보유통의 촉진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인간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보의 집중과 잘못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1970년대 이후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함과 더불어 1988년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II. 제정배경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도입필요성은 행정정산망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것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함에 따라 정보처리의 대량성, 검색·결합의 신속·용이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전산화에 따른 역기능 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즉 주민등록, 국세, 부동산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 부문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컴퓨터 처리가 확대되면서 이들 자료들의 유출·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었으나 당시의 법령들로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보화사회로 가기 위한 주요과제로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1.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정보화사회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발생한 산업사회 이후를 가칭하는 개념으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생산·분배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생산된 정보는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자우너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사회의 변화는 다방면에 걸쳐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등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반면에 각종 컴퓨터 범죄, 프라이버시침해, 정보독점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개인의 사생활침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생활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불법·부당 수집에 따른 위협

공적·사적부문을 막론하고 업무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축적할 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즉, 개인에 관한 기록들이 개인의 참여없이 어떠한 특정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수집, 관리될 경우 개인은 자기에 관한 기록들이 개인의 참여없이 어떠한 특정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수집, 관리될 경우 개인은 자기에 관한 기록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되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과정에서 수집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개인에 대하여 단편적인 부분정보만을 집중 수집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허상이 형성되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위협

특정 목적에 따라 개인의 동의하에 수집된 정보가 각 기관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유용과 목적외 사용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 경우 당초 수집시에 유의했던 관련 사항들이 무시됨으로써 개인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부분적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다. 부정확한 데이터에 따른 위협

부정확하거나 잘못 기록된 정보, 과거의 정보, 부분적인 정보가 이용되거나 누락될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 특히, 컴퓨터처리의 경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그 발견이 매우 곤란하며, 개인에게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 시기의 정보가 장기간 말소, 정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

라. 무권한 이용에 따른 위협

정당한 구너한을 갖지 아니한 자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부당하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 데이터를 변조, 가공 또는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특정 개인의 인격적 침해나 명예가 크게 손상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수작업처리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컴퓨터 처리의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2 행정정보화 현황

우리나라에서 행정부문에 대한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부문을 행정 국방 공안 교육연구 금융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행정전산망사업은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전국적 단일 행정권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난 198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기간중에는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 전국적 규모의 대국민 서비스에 관련된 우선업무(6개)와 총무처의 인사행정정보관리, 내무부의 종합토지세관리, 외무부의 외교정보관리 등의 계획업무를 개발하였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능률의 제고, 대민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각부처의 업무를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효과가 큰 우선업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업무인 중점 지원업무와 기타 신규 개발업무인 계획업무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중앙전산본부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공DB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제공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린정부서비스 유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PC통신을 통한 안방행정시대를 앞두고 있다.

3.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대두

행정전산망사업 등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종전의 거주지단위 민원서비스 체제에서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부처간 행정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민주화를 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내에 전산으로 입력·처리되는 일반 개인의 신상정보가 증대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입력, 전산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는 의료보험 관련자료를 담당자가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된 사례, 주민등록 기록을 열람한 후 가족상황을 파악하여 독신녀 주거지를 범죄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자동차 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외제 고급승용차의 차주확인을 통하여 강도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의 입력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됨으로써 범죄 피의자로 오인되어 수차에 걸쳐 경찰에 연행되어 부당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관리 전산망의 자료를 변조하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당시의 법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경우(부당하게 타인의 정보를 열람·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곤란)가 많고 형법, 의료보험법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처벌위주의 사후구제에 그치고, 그나마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1989년 2월에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서 내무부의 '주민등록증 전자카드 신분증 대체계획'과 관련하여 사생활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총무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그후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악용사례 및 보호법 제정이 시급함을 보도하는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서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II.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총5장 25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총29조), 시행규칙(총13조)이 있다.

법률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제4장 보칙, 그리고 제5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에는 집합체 또는 날개를 불문하며, 복제물도 포함된다. 컴퓨터내에 수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입력물이나 출력물에 기록된 정보도 포함되며, 컴퓨터처리와 병행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각급학교, 특수법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등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보화의 진전과 고나련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자아에 관한대통령긴급명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등 정보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제한

개인정보 중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컴퓨터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3.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정보화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리인 정보통제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어 이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화일의 신규보유, 변경, 폐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은 총무처장관이 분기별로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기별로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각 기관별로도 당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DJEJG게 처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4. 개인정보의 관리 이용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 변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DNSUDD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산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입·출력자료의 발생·폐기 기록유지,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내역 자동기록 및 점검, 개인정보취급자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정보의 사용방법,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도록하여 개인정보의 부당한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5.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열람 결과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열람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열람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열람의 청구는 개인정보화일공고에 나타난 열람청구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하고자하는 항목은 개인정보화일공고에 표시된 항목을 참조하거나 해당 열람부서에 비치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보고 선택하여 청구하면 된다.

6. 벌칙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IV. 운영실태 및 성과

1. 운영실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제정,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시달 등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축조해설집을 발간 배포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 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에 관하여 95년 7월 8일 및 96년 3월 26일자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 보안세미나, 학술세미나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여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개인정보화일 보유현황>

(96.3.16 기준)

구 분	보유기관수	화일종류	보유화일수
중앙행정기관	50	91	224
지방자치단체	4,005	63	9,462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672	192	1,001
총 계	4,727	346	10,687

- PART 2 / 임범상(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신용정보법 관리제도

- PART 3 / 엄호성(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

개인정보 유출실태와 범죱이용 현황

- PART 4 / 이정원(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범죱구성 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 PART 5 / 김성천(위덕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

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팩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요즈음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앞면에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손톱만한 크기의 IC(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며, IC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지문, 국민연금 등 7개 분야 20여개 사항이 입력돼 있다. 시는 전자주민등록발급 대상자를 약 8백만명으로 잡고 카드 제조와 발급에 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정보(특히 의료와 개인 경제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거대해지는 데이터베이스(병원, 공공기관 등)나 통신망(인터넷 등) 등에 관한 것들이지, IC 회로를 내장한, 전국민을 위한 전자주민카드는(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반박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낙 유례가 없는 일이라 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자랑스레 주장들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에게만 요구하는 지문을 전국민 모두에게 받아서 컴퓨터로 스캐닝해서 디지털 정보로 담아 둔다니! 아마도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단 지문을 채취해서는, 슈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민의 지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대조라도 해볼 생각인가 봅니다. 이는 전국민의 모든 범죄에 대한 용의자화라 하겠습니까.)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사생활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수많은 시민 단체가 활동 중이고, 각 나라마다 여러 입법 초안을 비교하면서 학술대회까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나라 시민 단체들은, 아직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 봤지만,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과 법률 제4969호인 “정보화촉진기본법”). 다만, 정보 통신부가 올해 발표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중에 “정보화촉진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특히 그 중점과제를 선정한 기준이 엉뚱하게도 “2000년까지 실현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화 사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o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PC통신 등을 통한 주민등록, 인허가증 등 각종 증명 발급 및 자동차민원종합처리 실시 등 One-Stop 서비스 개발

- 전자주민등록카드 제도 시행 : '96~'97년 시범사업 추진 및 보완, '98년부터 본격발급 개시

이처럼 전자주민카드는 뚜렷한 법적근거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그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행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기술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악몽으로만 여겨집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있는 정보는 자신의 것이라 해도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출력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형태로든, 고의로든 실수로든, 개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 복사, 저장, 판매, 등을 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그리고 인간의 제도적 통제 장치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인 만큼 완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에 의해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크래킹당해 정보가 누출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 불법으로 그러한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운전 위반과 사고 경력, 국민연금증에 실려 있을 각종 데이터 (직업, 직위와 그로 추정 가능한 재산 상태 등), 의료보험증에 실려 있을 병원 방문과 치료 경력, 사소한 병력과 개인의 세세한 건강 데이터가 들어 있을 병원의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일련 번호 (예컨대 의료 보험증 번호),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인감증명에 관한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등 초본과 지문.---이러한 중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저장, 복사, 열람, 전송이 순식간에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하나의 카드에 담아 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전자 개 목걸이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자주민카드는 항상 분실 파괴의 위험이 따를 것이므로, 분명히 전 국민의 전자주민카드에 실린 모든 데이터는 시시각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고 저장될 것입니다. 누구든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제권을 갖는 사람이 곧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빅브라더,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기관의 무지막지한 위력과 그에 의한 인권 침해의 악몽에서 깨 깨어 나기도 전에 더 큰 악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도대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자주민카드를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2)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3)지문과 같은 정보를 꼭 국가 정보 기관에서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느 나라에서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3) 주민증과 같이 전시에나 필요한 신분증 제도가 과연 아직도 필요한가? (4)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주민등록이나 호적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아예 주민증과 등초본, 호적제도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는가?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꼭 인감증명서라는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가? 혼란이 우려된다? 밤 12시 통금을 없앨 때 누구나 혼란을 우려했지만, 곧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통제에서의 자율로의 전환은 일시적인 혼란을 감수해서라도 얻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발하고 국민을 일깨워서 권리를 보호하는도록 하는데 앞장서야할 일간 신문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편리함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사저널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확실히 다루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외국의 사례와 논의,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과 외국의 입법 사례를 등을 조사하여 시사저널이 훌륭한 기사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훌륭한 책과 논문을 발표한 겐디 교수와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에서 일단 기사가 나간 뒤에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운동 단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생활 보호, 인권관련 단체, 언론기관등에 이 사실을 알려서 전세계적인 저항이 일어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기술적 제도적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없이는 절대 전자주민카드가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기사 작성에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인터뷰나 인용을 위해), 세계 각국의 사생활보호 인권단체들을 우선 접촉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사를 만들어 가는게 좋을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인권 자료실		
연도	구분	수량
'98 5/12	B4-1	32

전자주민카드사업계획

1. 추진배경

가. 주민등록증 경신 필요

□ 주민등록증 경신시기 경과

- 우리나라는 '68년 이후 평균 8년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여 왔으나 현행 주민등록증은 12년이 지남
- 현 주민등록증은 훼손되거나 마멸되고 사진의 탈·변색과 용모변화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증 본래의 역할 수행이 곤란

□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

- 신분증의 사진, 기재내용 등을 변조하여 여권위조, 경제범죄, 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 및 고용, 범법자의 신분위장 등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 '83년 이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2천만건에 달해 사회안녕 질서유지와 국가안보 취약

신분 기재사항 => 18만만건

□ 기능이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증

- 상시소지 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기재내용이 단순하여 이용용도가 미흡하고 인적사항이 동일한 각종 휴대증명의 통합의견 대두
- 제증명의 국가공증시대에서 증명정보의 휴대화로 전환 필요
- 휴대증명의 다양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증명제도 도입

나. 경제수준과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신분증 도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 현재의 종이증명시대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신분증 시대로 전환
- 국민편의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각종 증명을 하나로 통합

□ 정보의 개인 휴대화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증명내용을 전자카드에 수록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연간 발급건수: 1억7천만통

-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증명을 전자카드로 대체하여 국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정보화시대의 전자열쇠

- 정보화시대에 제반 민원처리는 무인, 재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자매체 필요

- 각종 신고서 처리, 컴퓨터 통신, 전자거래 등 사회·경제 활동의 근간으로 전자신분증 활용

다. 정보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

정보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 2천년에는 IC카드 시장이 총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 고부가가치의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 계기 마련

※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비메모리분야가 72% 차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정부 구현
- 제증명 발급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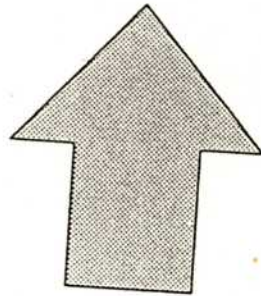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증명 발급제도의 획기적 개선
- 다기능 전자카드의 보급으로 국민들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증명의 다용도 활용

2. 추진목표

민원행정의 세계화

- 국민 편의 도모
- 행정의 능률화
- 세계화 전략에 기여
- 정보화 사회의 실현
- 국내 정보산업 육성



'98년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
- 사회전반의 전자카드 운영망 구축
- 17세이상 3,400만명의 전자주민카드 발급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3. 추진방침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통합

□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 '96년 : 발급센터 구축 및 업무개발
- '97년 :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 구축
- '98년 :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시험운영

□ 예산은 비용/편익을 감안, 기관별로 분담

- 발급센터 구축 및 전자카드 제작·발급은 국비와 지방비
- 운영망 구축비는 기관별로 부담, 국민편익 부분은 국비 추진

□ 추진체제 확보

- 추진협의회가 전자주민카드 발급 관련 최고 심의기관이 되어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종합 조정
-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관리를 위해 업무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 전자카드 기술자문 및 감리를 위해 감리기관 지정·운영
- 전자카드 제작 및 발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 통합증은 전자카드로 제작

- 현행 주민등록증의 단순기능, 위·변조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증으로서의 다목적 기능 구현이 가능한 최신 기술의 전자카드를 이용
- 사후 관리 및 IC 칩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산업 육성, 국가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칩을 사용
- 제작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제작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은 외부에 기록하고 IC칩 내부에는 주민등록사항, 운전면허사항 등 각 업무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증명내용 상세기록

□ 통합증은 업무별로 독립적 증명기능 수행

- 기존의 단순 신분확인용에 부가하여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전자주민카드에 수록, 휴대증명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도의 완전개선
 - 연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량 : 약 1억2천만건
- 읍·면·동에서 발급하여 사용하던 인감증명서를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인감으로 대응
- 통합신분증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교통위반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관련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확인을 통합신분증으로 처리

□ 자료의 통합관리와 카드의 일괄발급을 위해 발급센터 구축

- 전국민의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절감과 발급 기술의 일관성 유지 및 발급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한 곳에 발급센터를 설치 운영
- 각 기관에서는 일제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에 관한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발급센터의 통합 DB 구축 지원
- 발급센터에서는 통합DB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대량의 자료처리가 용이한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의 신속·경제성을 위해 대형 발급장비 설치
- 읍·면·동사무소는 기 운영중인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연계하고 사진, 지문, 인감자료 처리를 위한 장비를 추가 설치
-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을 발급센터와 연계하고 자격취득 및 변동자료 처리를 위한 장비 설치

□ 주민망을 중심으로 종합통신망 구축

- 전자주민카드에는 여러기관의 자료가 수록되므로 신규발급과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발급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
- 전기통신설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수준에 적합하고 다양한 LAN, WAN 프로토콜을 수용하여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 가능한 통신망으로 구축

□ 최신의 개발기술을 응용하여 업무개발

- S/W는 전체 전산망의 일관성 유지와 보안성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사업자 총괄관리하에 개발
- 개발환경은 정보통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S/W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최신 환경으로 구축
- 발급센터에는 통합자료의 구축 및 운영 S/W, 전자주민카드 발급기와의 연동프로그램, 발급 프로그램 등을 개발·설치
- 읍·면·동에는 발급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진, 지문, 인감자료를 입력·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설치
-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는 발급센터와의 연계 및 전자주민카드 발급·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설치

□ 전자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여러가지 증명이 통합된 증을 휴대증명으로 활용하고 본인 확인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의 운영기반 구축
- 손쉽게 본인의 카드내용을 확인하고 부득이 별도의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공공장소에 설치
- 휴대용 신분확인기를 이용하여 범법자 또는 신분위장자 색출 등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휴대용 면허확인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 의료보험보험자는 의료보험 자격, 징수, 급여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보험취급요양기관에서는 자격확인, 진료기록의 색인카드로 활용
-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 및 수급내역을 확인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시 활용

□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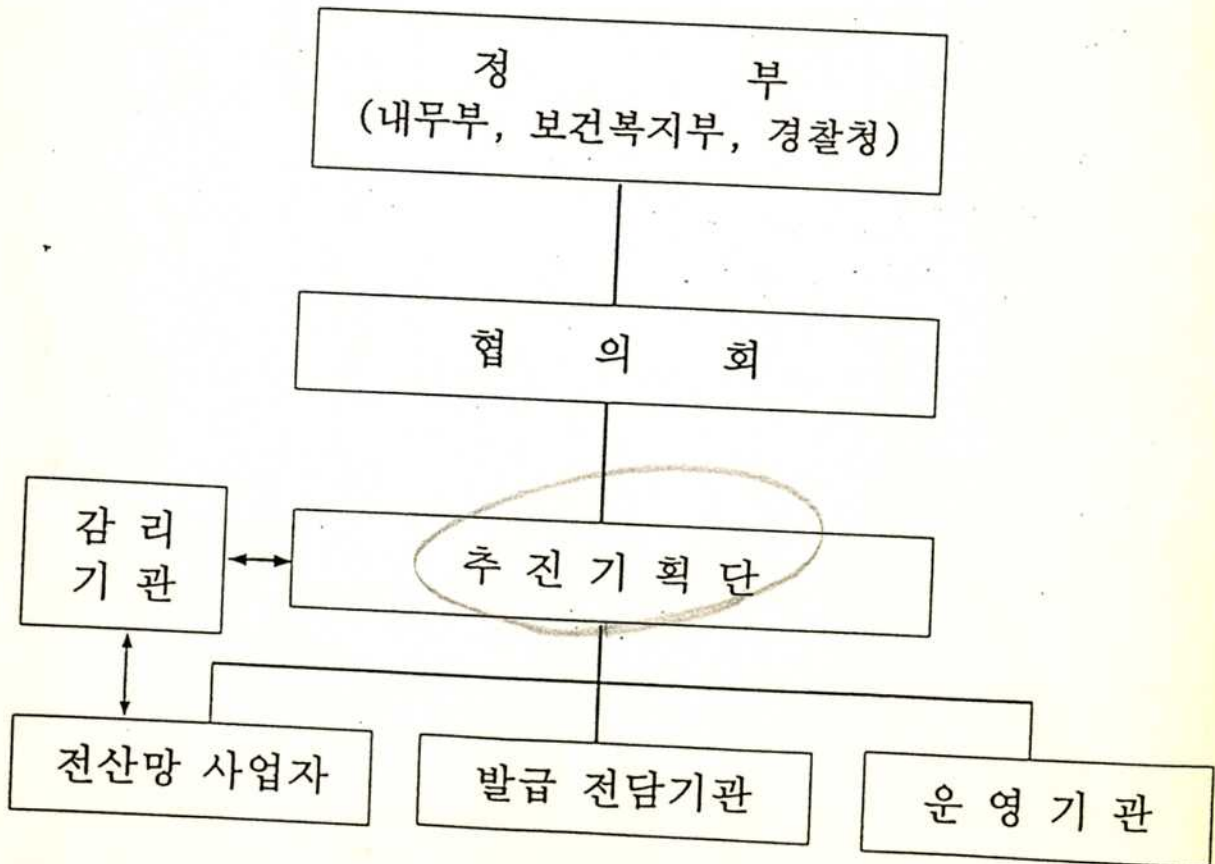
- 발급센터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정보를 보유하게 되므로 철저한 보안체계를 확보하되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비설치공간에 대한 접근통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기설치 및 건물설계·구축, 경보장치의 설치, 외래자에 대한 경비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시설물 보안체계 확립
- 전산망보안과 비허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은 별도의 독립된 폐쇄망으로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통제기능을 구현하여 보안체제 강구
- 카드내 정보는 보안알고리즘과 전자카드의 보안키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위·변조 및 불법사용을 최대한 방지
- 카드표면에 특수 인쇄기술을 적용하여 도안을 설계하고 사진, 문자의 위·변조 방지장치를 하되 IC내부에는 업무별로 분리·저장하고,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타인사용을 방지하되 관련기관은 해당자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

4. 추진체계

가. 개요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이므로 사업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전담추진기구와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나. 체계도



다.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협 의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원, 내무부, 안기부,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의 국장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의 이사, 단장 ○ 학계(정보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심의·조정 - 제도개선사항 심의 - 재원조달 및 일정계획 심의
추진 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원, 내무부, 안기부,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 전산망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총괄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추진 - 발급전담기관 및 전산망 사업자 관리, 감독 - 발급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 카드 및 장비의 표준화 - 전자주민카드 검수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감리기관	한국전산원	- 기술자문 - 사업감리
전 산 망 사 업 자	-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전산망 및 발급센터 구축 - 발급 및 운영업무 개발 - 시험운영 및 교육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 지원 - IC 검수 - 운영장비 사양제정
발 급 전담기관	한국조폐공사	- 증 도안작성 및 백지증 제작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 지원 - IC 검수 - 증 위·변조방지 기법 개발 - 발급시설 구축 및 발급
운영기관	공 공 기 관 <u>민 간 단 체</u> 제증명이용기관	- 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 변동사항 갱신발급 - 화상DB 입력 - 전자주민카드 활용 - 대국민홍보